

	<b>산학협력일운영규정</b>	규정번호	3-5-4
		제정일자	1997.03.01.
		개정일자	2015.03.01.
		개정차수	2차
		소관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교수들의 산학네트워크 구축과 산학 연계연구 활성화를 통하여 산학협력 강화, 취업활성화 및 실무 중심의 수업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산학협력일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산학협력일 선정) ① 산학협력일은 주 중의 하루를 선정하여 강의를 하지 않고 산학협력에 집중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.

② 동일한 학과 내에서 각 교수들의 산학협력일은 가급적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며, 학사업무 및 행정처리에 유의하여 산학협력 요일을 선정한다.

제3조(자격) 산학협력일 활용 자격은 대학 교원으로 임용된지 1년 이상인 자로 한다.

제4조(기타) 산학협력일이 학사업무 및 학교행사등과 중복이 될 때에는 학사업무의 참여를 산학협력일 보다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199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